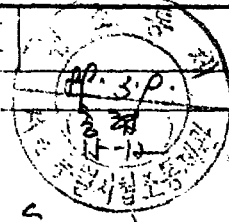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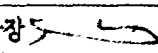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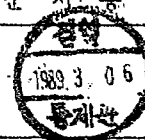




보도	필요	불요
방법	자료제공, 특집, 의견(설명)	
과장		국장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시설30312-82	(전화: 731-6346)	시행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7 · 준영구 10. 5. 3. 1.	시 장	
수신처 보존기간	준영구		
시행일자	89. 3. 1		
보조기관	도시계획국장 전 결	협조기관 법무담당관  협조통계관  행정과장 	문서봉제
	시설계획과장 		
	시설계획1계장 		
기안책임자	박필용(강영덕)	발송인	
경유 수신 참조	각안참조	발신 명 의	시 장
계 목	도시계획시설(시장)변경결정		
(제1안) : 내부결재			
1. 도정30310-245('89.1.14)호와 관련입니다.			
2. 위호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영등포구 역의도동 36-2의 도시계획시설(시장)			
변경결정 요청이 있어, 우리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('89.2.10)에 상정 심의 가결되었기			
3.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변경			
결정 코자 합니다.			
첨부 : 1) 관계서류 1건. (위지도 1매)			
2) 고시문 1부. 끝.			
(제2안)			

수신 : 건설부장관
참조 : 도시시설계획과장
제목 : 같 음.
1. 우천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을 별첨과 같이 변경 결정 하였기 보고 합니다.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 끝.
(제3안)
수신 : 총무처장관
제목 : 관보게재 의뢰
1.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의뢰 합니다.
가. 게재구분 : 고시.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시설(시장)변경결정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.
마. 게재내용 : 별첨.
첨부 : 고시문 사본 2부. 끝.
(제4안)
수신 : 영등포구청장
참조 : 도시정비과장
제목 : 같 음.

1. 도정30310-245('89.1.14)호와 관련임.

2. 위호로 영등포동 36-2의 도시계획시설(시장)변경결정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
별첨과 같이 고시되었기 통보하니 도면정리 및 관계부서에 알리기 바람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 끝.

(계5안)

도시계획국장

수신 : 수신처참조 - 146

발신 : 과장

제목 : 같 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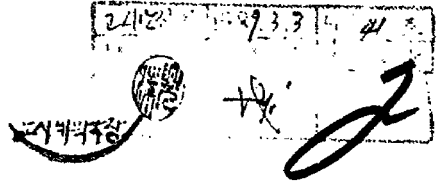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을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
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 끝.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상공과장.

서울특별시 고시 제 99 호
도시계획시설(시장)변경결정

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102호(1981.4.4)로 결정된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을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9. 3.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시장)변경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규모(m ²)	비 고
기정	시 장	영등포구 여의도동 36-2	6,274	건물연면적13,554.8m ²
변경	"	"	0	폐 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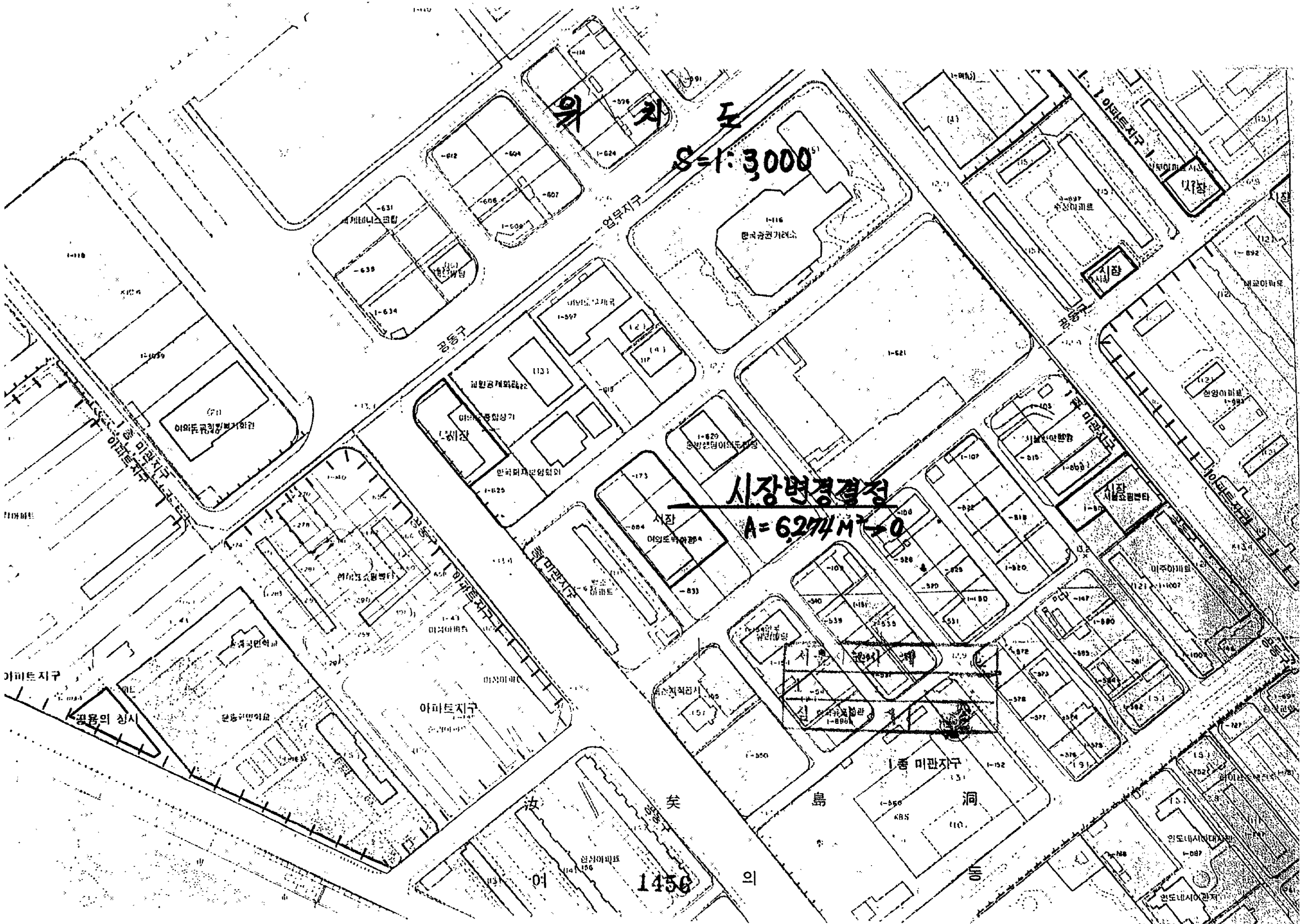
나. 도면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영등포구청 비치 도면과
같음. 끝.

의치도

S=1:3000

시장변경결정

A=6,274M²-0



1456